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세칙

제정 2018. 7. 17.

개정 2018. 8. 29.

개정 2021. 12. 29.

개정 2024. 11. 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0조 및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인권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 위촉) 위촉직 운영위원은 센터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관심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교수, 강사,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신고 등) ① 인권침해 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접수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사유 발생 당시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부산대학교 구성원이었던 사건은 본 센터의 처리대상으로 본다.

③ 대학의 다른 구성원이나 기관에 신고된 사건 및 온·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게시된 경우는 센터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때에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피신고인에 대한 긴급조치) ① 신고를 받으면 센터장은 피해자와 신고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피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양식1: 피신고인에 대한 긴급조치서>

1.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2. 신고인의 인적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
3. 피해자 등과 접촉하지 않으며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
4.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② 성폭력· 성희롱의 피신고인이 교수나 비정규교수강사로서 신고내용이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 관계부서에 일정 기간 피신고인의 강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와 2차 가해 금지) ① 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관계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자필서명 문서로 서약하며, 문서 전달은 인비로 한다. <양식2: 서약서>

② 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관계자는 피해자를 의심· 부인· 비난· 헐박·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당사자 익명 표기) 운영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자료에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하며, 이름은 A, B, C 등으로, 소속은 ㉠, ㉡, ㉢ 등으로 표기한다.

제7조(피해자의 의사 존중) ① 사건처리에 있어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화해· 중재· 조사심의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조치는 필요시 요청인의 자필서명 서면에 의한다.

<양식3: 중재요청서>, <양식4: 중재확인서>, <양식5: 절차 중단 요청서>

제8조(조사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의 사람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인인 자는 조사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심의위원은 위원직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조사시 피해자 보호) ① 조사의 전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개시를 알린다.

2. 조사 일정은 조사대상자와 조율하여 정한다.

3. 조사 전후 이동시 당사자간 분리가 유지되도록 동선을 관리한다.
 4. 피해자가 안전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5. 진술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도록 매 조사 시작시 회의참석자들에게 고지한다.
 6. 조사과정중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매 조사 시작시 회의참석자들에게 고지한다.
 7. 조사과정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매 조사 시작시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 ②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대리인 출석 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조사관계자는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⑤ 사건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조사종결 전에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후속조치) ① 센터는 사건종결 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센터는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구술로 통보한다.
- ③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조사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처리결과를 인권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 ④ 피해자 등에 대한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 등이 있을 경우 센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당해 행위가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라목의 성희롱이나 기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성희롱 또는

기타 인권침해사건으로 조사 회부

부칙

이 세칙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